

청주교육대학교 학칙

전부개정	2014.	9.	11.	제1349호
1차개정	2014.	12.	10.	제1363호
2차개정	2015.	6.	16.	제1385호
3차개정	2015.	8.	18.	제1388호
4차개정	2015.	9.	30.	제1393호
5차개정	2015.	11.	18.	제1400호
6차개정	2016.	4.	29.	제1420호
7차개정	2016.	12.	7.	제1431호
8차개정	2017.	8.	8.	제1447호
9차개정	2018.	2.	28.	제1457호
10차개정	2019.	3.	28.	제1478호
11차개정	2019.	4.	15.	제1482호
12차개정	2019.	5.	16.	제1488호
13차개정	2019.	11.	11.	제1499호
14차개정	2020.	4.	29.	제1511호
15차개정	2020.	11.	3.	제1553호
16차개정	2021.	5.	26.	제1584호
17차개정	2021.	7.	12.	제1587호
18차개정	2021.	9.	15.	제1589호
19차개정	2022.	1.	6.	제1594호
20차개정	2022.	6.	3.	제1609호
21차개정	2022.	8.	12.	제1612호
22차개정	2023.	4.	4.	제1632호
23차개정	2023.	6.	21.	제1636호
24차개정	2025.	5.	12.	제1661호
25차개정	2025.	12.	24.	제1679호
26차개정	2026.	5.	22.	제168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청주교육대학교(이하 “우리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학생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① 우리 대학은 「교육기본법」 제2조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인성과 창의성 및 리더십을 갖춘 유능한 초등교원과 초등교육 전문가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4.>

② 삭제 <2025.12.24.>

1.~ 8. 삭제 <2025.12.24.>

제3조(교육조직) ① 우리 대학에 대학과 교육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및 교육전문대학원을(이하 “전문대학원”이라 한다.) 둔다. <개정 2025. 5. 12.>

② 전문대학원의 학칙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5. 12.>

③ 학문 분류상 전문적 독립성과 사회적 수요, 대학의 장기발전계획 등에 비추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학에 심화과정을, 대학원에 학과 전공을 두어 운영한다.

④ 대학에 두는 심화과정 및 대학원에 두는 전공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대학의 입학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입학정원: <별표1>)

⑥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⑦ 대학원의 입학 정원은 <별표2>과 같다.

제4조(전임교원의 소속 및 교수시간) ① 전임교원은 조교수이상의 교원을 전임교원이라 하며, 전임교원은 대학의 심화과정이나 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의 학과전공에 소속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대학과 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겸무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개정 2025. 5. 12.>

② 총장은 전임교원의 소속을 변경하거나 겸무를 명할 수 있다.

③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주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전문대학원에 속한 전임교원은 대학 또는 대학원 강의시간을 교수시간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5. 5. 12.>

제5조(겸임교원 등) ① 총장은 겸임교원, 명예교수, 강사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겸임교원 등의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연구년) 전임교원이 일정기간 동안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년 제도를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장 조직

제1절 총장 · 교육대학원장 · 교육전문대학원장

제7조(총장) ①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우리 대학을 대표한다. <개정 2020. 4. 29.>

② 총장 유고시 교무처장이 그 직을 대리한다. <신설 2020. 4. 29.>

제8조(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3항제2호의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르며,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 5. 16.> <개정 2023. 6. 21.>

제9조(교육대학원장) ① 대학원에 교육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대학원장은 총장이 전임교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대학원장은 대학원의 행정을 통할하고, 대학원의 학생을 교육한다.

제9조의2(교육전문대학원장) ① 전문대학원에 교육전문대학원장(이하 “전문대학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전문대학원장은 총장이 전임교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전문대학원장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5. 5. 12.>

제10조(교수회) ① 우리 대학의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교수회는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총장이 된다.

② 교수회는 의장 또는 교수 10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③ 교수회는 재적교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다만, 제6호는 심의사항으로 한다.<개정 2019. 4. 15.>

1.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입학(전입학, 재입학 및 복적 포함), 졸업 및 진급에 관한 사항

3. 시험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1. 9. 15.>

5.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4. 15.>

7. 그 밖에 총장이 교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의2(대학평의위원회) ① 「고등교육법」 제19조2에 따라 대학발전 및 학칙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4. 15.>

② 대학평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4. 15.>

제2절 행정조직

제11조(과(처)) ① 우리 대학에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총무처, **교육혁신본부**를 둔다. <개정 2020. 4. 29.>, <개정 2020. 11. 3.>, <개정 2026. 5. 22.>

②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교육혁신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보하며, 총무처장은 서기관이나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4. 29.>, <개정 2020. 11. 3.>, <개정 2026. 5. 22.>

③ 각 처**와** 본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0. 4. 29.>, <개정 2020. 11. 3.>, <개정 2026. 5. 22.>

④ 제1항의 조직에 두는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교무처) 교무처는 교육과정, 수업, 학점, 교원인사, 교원양성전담업무, 교원자격검정업무, 교육실습지원 및 부설학교협력센터 운영, 교양교육지원센터 운영, 그 밖의 교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29.>

제13조(학생처) 학생처는 입시, 학적, 학생 생활지도, 장학, 후생, 보건, 학생병무, 학생복지, 학생상벌, 학생단체 지원 및 지도, 학생 제증명 발급, 학생상담센터 운영,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운영,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교육센터 운영, 그 밖의 학생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29.>

제13조의2(기획처) ① 기획처는 대학발전계획 및 평가관련업무, 대외협력기획, 대학홍보, 예·결산 기획업무, 총장이 지정하는 외부 재정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및 운영, 성과관리 및 연구 업무, 대학 발전기금 조성 및 발전기금재단 관리, 국제교류센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4. 29.>

② 기획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의3(교육혁신본부) ① 교육혁신본부는 대학 교육 혁신 및 초·중등 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확산에 관한 정책의 기획·조정 및 사업을 총괄한다.
<신설 2026. 5. 22.>

② 교육혁신본부는 각 호의 부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신설 2026. 5. 22.>

1. 학술문화원은 학술정보 지원, 대학문화 기획 및 지원, 도서관·교육역사관·교육방송국·대학신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되, 도서관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교육기본시설로 정한다.

2. 정보전산원은 대학 내 전산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되,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교육기본시설로 정한다.

3. 교육연수원은 교원의 제반 연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4. 교육연구원은 교육연구 및 교육현장과의 연계지원 등 학술연구사업을 운영하며, 교원전문성지원센터, 문해력지원센터 및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 교육혁신본부 및 학술문화원, 정보전산원, 교육연수원 및 교육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6. 5. 22.>

제14조(대학원 행정실)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행정실은 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교무와 학생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5. 12.>

제15조(총무처) 총무처는 보안, 관인관리, 직원인사, 급여, 기록물관리, 법무, 자체감사,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회계 및 결산,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각종 공사 및 시설 관리,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원관리, 비상기획, 그 밖에 타 처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 4. 29.>, <개정 2020. 11. 3.>

제3절 부속시설 및 부설학교 등

제15조의2 삭제 <2026. 5. 22.>

제15조의3 삭제 <2026. 5. 22.>

제16조(부속시설) ① 우리 대학의 부속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삭제 <2026. 5. 22.>

2. 평생교육원

3. 과학영재교육원
4. 삭제 <2023. 4. 4.>
5. 삭제 <2023. 4. 4.>
6. 삭제 <2026. 5. 22.>
7. 삭제 <2018. 2. 28.>
8. 생활관
9. 삭제 <2020. 4. 29.>
10. 산학협력단
11. 삭제 <2020. 4. 29.>
12. 삭제 <2022. 8. 12.>
13. 인권센터 <신설 2022. 6. 3.>

② 제1항의 부속시설에 장을 두며, 장은 총장이 전임교원 중에서 임명한다.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그 부속시설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총장은 부속시설을 평가하여 존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2026. 5. 22.>

제18조(평생교육원) ①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9조(과학영재교육원) ① 과학영재교육원은 과학영재들의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조 삭제 <2023. 4. 4.>

제21조 삭제 <2023. 4. 4.>

제22조 삭제 <2026. 5. 22.>

제23조 삭제 <2018. 2. 28.>

제24조(생활관) ① 생활관은 기숙사의 관리·운영·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5조 삭제 <2020. 4. 29.>

제26조(산학협력단) ① 우리 대학에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법인으로 청

주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7조(부설학교) ① 「국립학교 설치령」 제8조에 따라 우리 대학 재학생의 교육실습을 지원하고 교수들의 연구를 촉진하며 초등학교 운영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부설초등학교를 둔다.

② 부설초등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7조의2 삭제 <2020. 4. 29.>

제27조의3 삭제 <2022. 8. 12.>

제27조의4(인권센터) ①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우리 대학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둔다. <신설 2022. 6. 3.>

②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2. 6. 3.>

제4절 위원회

제28조(대학운영위원회) ① 대학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9조(교무위원회) ① 대학의 학사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4. 29.>

② 교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4. 29.>

제30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 12. 10.>

②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0조의2(교육전문대학원위원회) ① 전문대학원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전문대학원위원회를 둔다.<개정 2025. 5. 12.>

② 교육전문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5. 5. 12.>

제31조(대학인사위원회) ① 대학에 교원에 대한 임용동의 및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2조(교원양성위원회) ① 「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의2에 따라 교육과

정 개발, 편성 및 운영,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양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3조(학위검증위원회) 삭제 <개정 2016. 4. 29.>

제34조(예산·결산심의위원회) 삭제 <개정 2016. 4. 29.>

제35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 근거하여 등록금 책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5조의2(재정위원회) 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근거하여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6조(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① 대학 구성원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하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7조(후생복지시설운영위원회) ① 대학의 각종 후생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후생복지시설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후생복지시설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8조(양성평등추진위원회) ①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2에 의거하여 교원 임용이나 그 밖의 사무에서 양성평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추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4. 29.>

② 양성평등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9조(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① 대학의 장애 학생에 대한 특별한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둔다.

②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0조(학생활동자문위원회) (삭제) <2021. 9. 15.>

제40조의2(학생생활지도위원회) ① 학생활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지도위원회를 둔다.<신설 2021. 9. 15.>

②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1. 9. 15.>

제41조(자체평가위원회) ①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고등교육기관

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2조(생명윤리심의위원회)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인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구·개발이나 이용에 관한 연구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3조(혁신위원회) 삭제 <개정 2016. 4. 29.>

제3장 학사 운영

제1절 학사운영 일반

제44조(수업 및 재학연한) ①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학의 전입자 및 재입학자의 경우에는 종전에 재학한 연한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8. 8.>

②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5학기로 하되, 재학연한은 10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2. 10.>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개정 2017. 8. 8.>

제44조의2(수업의 방법) ① 학부의 수업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4. 29.>

② 대학원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및 계절수업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4. 29.>, <개정 2020. 11. 3.>

③ 제1항 및 제2항의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등의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4. 29.>

제45조(학년도 등) ①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4. 29.>

② 학기는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대학은 제2학기의 수업을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

다.

제46조(수업일수와 휴업일) ① 대학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제 및 야간제는 학기당 15주 이상, 계절제는 방학기간 내에 학기당 3주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3.>

③ 정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기휴가

2. 동기휴가

3. 개교기념일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개정 2020. 4. 29.>

5. 삭제 <개정 2020. 4. 29.>

④ 총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9.>

⑤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제2절 입학과 등록

제47조(입학 시기)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② 전입학, 재입학, 복적 등의 입학 시기는 학기 초 21일 이내로 한다.

제48조(입학자격) ① 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대학원의 입학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전입학) 대학의 전입학은 여석이 있을 경우 타 교육대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에게만 허가할 수 있다.

제50조(재입학) ① 대학의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1회에 한하여 교무위원회를 거쳐 교수회의 심의·의결로 허가할 수 있으며, 병역복무의무기간은 재입학 경과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
2.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3. 통산 3회 성적경고를 받은 자 <개정 2018. 2. 28.>

② 대학원 재입학은 제적 또는 퇴학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나 재학기간 내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여 제적된 자는 제외한다.

제51조(입학전형) ① 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할 희망하는 사람은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학 입학자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정하되,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1.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2. 고등학교 내신 성적
3. 면접고사 성적
4. 서류평가 성적

③ 대학원의 입학 전형은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면접고사와 서류심사를 통해 입학전형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전공분야에 대한 필답고사와 실시고사를 포함할 수 있다. 대학원의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52조(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대학 입학전형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3조(대학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대학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1. 3.>

제54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사람은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6.>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를 한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26.>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21. 5. 26.>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개정 2021. 5. 26.>
3.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경우 <개정 2021. 5. 26.>
4. 그 밖에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1. 5. 26.>

제3절 휴학·복학·자퇴 및 복적

제55조(대학 휴학) ①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2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 및 총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특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병역복무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질병휴학인 경우에는 3주이상의 의사진단서를, 그 밖의 경우에는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신입생에 대해서는 입학 후 최초 1년간(1학년 1학기 및 2학기)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임신·출산·육아(1자녀당 2년 이내),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그 밖에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제2항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7.>

④ 휴학 기간은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임신·출산·육아, 질병 치료에 의한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7.>

제56조(대학원 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기 수업시수의 1/4를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는 사람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질병(2개월 이상), 국외체류, 병역, 임신·출산·육아(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1자녀 당 3년 이내) 등에 의한 휴학 <개정 2021. 7. 12.>

2. 휴학기간 종료 후 다음 학기의 수강과목이 개설되지 않거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복학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대학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로 인한 휴학기간은 통산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7조(복학) ① 휴학한 사람은 그 기간이 만료하거나 사유가 종료된 때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기간 전에 복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학 시기는 학기 개강일로부터 21일 이내로 한다.

제58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9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적한다.

1. 제44조에 규정한 재학연한을 초과한 사람

2.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사람

3. 소정 기간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

4. 타 대학에 입학한 사람 <개정 2014. 12. 10.>

5. 재학 기간 중 통산하여 3회의 성적 경고를 받은 사람. 다만, 이 조항은 대학생에게만 적용한다.

6. 그 밖에 총장이 제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0조 삭제 <2018. 2. 28.>

제4절 교육과정과 학점 취득

제61조(교육과정) ① 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양과정, 교직과정, 전공과정으로 구분하고,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2.24.>

②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2.24.>

제61조의2(마이크로디그리과정) ①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단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12.24>

② 마이크로디그리과정의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12.24.>

제61조의3(교원자격인증과정) ① 예비교사 핵심역량 인증제와 교원자격검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교원자격인증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12.24.>

② 예비교사 핵심역량 인증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5.12.24.>

제62조(교과이수단위)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이수시간을 1학점으로 한다. <개정 2025.12.24.>

제63조(수강신청)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수강과목을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4조(이수 학점의 제한) ① 학생은 매 학기에 24학점을 초과이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② 학점 미 취득자는 미 취득 학기 다음 학기부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재이수할 수 있다.

③ 대학원생의 학기당 이수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5조(재이수) ① 낙제점(F)인 경우 필수과목은 반드시 재이수하여야 하고, 선택과목은 해당과목을 재이수하거나 다른 과목으로 바꾸어 이수하여 그 학점을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② 교과목의 취득성적이 D+이하인 경우에는 재이수 할 수 있다. 다만, 교직과목은 취득성적이 C⁰이하인 경우에도 재이수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③ <신설 2015. 9. 30.> <삭제 2019.11.11.>

④ 교육과정 개정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과목이 변경 또는 폐지되었을 경우 총장은 해당 과목의 재이수를 위한 대체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24.>

제66조(전입학, 재입학 및 복적자 학점인정) 전입학, 재입학 및 복적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에 이수한 학점(학적부에 기재된 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케 한다.

제67조(국내·외 대학 학점 인정) 대학이 인정하는 국내·외 타 대학에서의 취득학점은 이를 우리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

은 따로 정한다.

제67조의2(공유대학 학점 인정) 공유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우리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12.24.>

제68조(국내·외 대학원 학점 인정) ①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을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협정관계에 있는 타 대학원에서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타 대학원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우리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고, 인정 과목에 대해서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야간제에 입학하고 휴학한 후 계절제에 복학하면 야간제에서 취득한 학점을 계절제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68조의2(연수 이수 실적의 대학원 학점 인정) ① 우리 대학 교육연수원에서 개설한 직무연수 이수 실적을 교육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5.12.24.>

② 연수 이수 실적은 6학점 이내로 인정한다. <신설 2025.12.24.>

제5절 시험과 성적

제69조(시험) 시험은 매 학기 또는 학년말에 그 학기 간에 수업한 범위 내에서 행한다. 다만, 과목에 따라 이를 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임시시험을 행할 수 있다.

제70조(응시자격) 학생은 총 수업 시간의 5분의 4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하면 해당 교과목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없다. 다만,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 시험에 응하지 못한 사람은 담당 교수의 승인을 받아 추가 시험에 응할 수 있다. 단, 대학원의 경우는 총 수업 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만 해당 과목의 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71조(대학 성적) ① 학업 성적은 각 교과별로 시험성적, 출석상황, 연구보고서,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되, D0 이상을 급제로 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점 수	평 점
A ⁺	95 - 100	4.5
A ⁰	90 - 94	4.0
B ⁺	85 - 89	3.5
B ⁰	80 - 84	3.0
C ⁺	75 - 79	2.5
C ⁰	70 - 74	2.0
D ⁺	65 - 69	1.5
D ⁰	60 - 64	1.0
F	0 - 59	0.0

② 추가시험은 A0급 이상의 성적을 부여할 수 없다.

③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급락만 구분하여 급제는 “P”로 낙제는 “F”로 표시하며, 평점은 부여하지 않는다.

④ 성적평가 자료가 미비할 때에는 잠정적으로 “I”(미완)의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수강 승인을 받고 수강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F”가 된다.

제72조(대학원 성적) ①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점 수	평 점
A ⁺	95 - 100	4.5
A ⁰	90 - 94	4.0
B ⁺	85 - 89	3.5
B ⁰	80 - 84	3.0
C ⁺	75 - 79	2.5
C ⁰	70 - 74	2.0
F	0 - 69	0

② 학업성적 C0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되 수료사정에 있어서는 전 교과목의 평점 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각 과목별 수업 총 시간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여야만 그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73조(성적경고) ① 학업성적의 평균평점이 1.75에 미달된 사람 또는 3과목 이상이 F인 사람에게 학기말에 성적경고 조치하고 본인, 보호자 및 지도교수에게 통보한다.

②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3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한다.

제74조(대학의 졸업논문) 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졸업논문을 과한다.

- ② 졸업논문작성 제출 시기는 최종 졸업학기의 소정의 기일까지로 하며 졸업예정자는 졸업 2학기 전에 논문작성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졸업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사람에게는 수료증만 교부한다.
- ④ 졸업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절 수료와 졸업

제75조(학점 인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급제로 인정된 과목은 소정의 학점을 인정한다.

제76조(학점 인정 시기와 취소) ①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학기말 또는 학년말로 한다. 일단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졸업생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졸업을 취소하고 자격을 박탈한다.

제77조(대학의 졸업학점과 수료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하고, 전교과목의 평점평균이 2.05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수업연한 중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학점을 이수한 학기말에 추가로 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개정 2025.12.24.>

② 학년별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18.> <개정 2025.12.24.>

1. 1학년: 39학점
2. 2학년: 81학점
3. 3학년: 121학점

③ 제1항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제61조제1항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상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졸업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4.>

제78조(대학원의 수료학점) ① 대학원의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30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10.>

② 해당 전공별 학점 추가이수로 학위논문을 대체할 경우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한다.<개정 2014. 12. 10.>

③ 제2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12. 10.>

제79조(학사 과정의 학위 수여) 이 학칙에 정한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74조의 졸업논문 심사에 통과된 사람에게는 별지 서식 제1호의 졸업증서에 의

한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0. 4. 29.>

제80조(대학원 과정의 학위 수여)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1. 대학원에서 정한 학점을 취득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석사 학위 논문 심사에 합격한 사람
 2. 삭제 <2014. 12. 10.>
 3. 대학원 수료자 중 1학기 이상 등록하고 6학점을 취득한 사람
- ② 제1항의 종합시험, 논문심사와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에 따른다.
- ③ 제1항 제3호의 자격요건, 시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④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절 등록금

제81조(등록금 책정 및 납부 의무) ①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휴학할 경우라도 해당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간 종료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받은 사람은 해당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등록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동법 제11조제4항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책정하여야 한다.

④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2조(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그 밖에 등록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반환한다.

제83조(복학자의 등록금) 등록금을 납입하고 휴학한 사람이 복학한 경우에 등록금이 휴학전에 납입한 금액보다 증액된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등록금은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절 공개강좌 · 연구생 · 외국인학생

제84조(공개강좌) 우리 대학은 교양 또는 연구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사람을 지도하기 위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85조(연구생) ① 대학원에 연구생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생의 자격 · 등록 · 수업 등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6조(외국인학생) ① 수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전공에는 외국인 학생을 둘 수 있다.

② 외국인 학생의 자격, 등록 및 증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으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전형을 거쳐 정원의 2% 이내에서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장 학생

제1절 학생 활동

제87조(학생 권리 존중) 우리 대학은 학생의 인격과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며 학생이 최고의 조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8조(총학생회 설치) ① 건전한 학생활동을 통하여 학풍을 쇄신하고,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청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총장은 국가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가 있을 때에는 총학생회의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총학생회 회장 및 각 부서의 부장, 차장과 대의원(이하 “간부”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대학 재학생으로 하며, 학생총회 및 학생대의원회에서 불신임을 받게 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 총학생회 간부로 당선 또는 선임된 사람은 학생처장에 통보한다. <개정 2020. 4. 29.>

④ 총학생회를 대표하는 총학생회장과 그 밖의 간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89조(총학생회비) ① 총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총학생회의 경비는 총학생회 회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징수 및 집행한다.

제90조(학생단체의 조직) ① 학생단체를 조직하려 할 때에는 학생처장이나 대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9.>

② 제1항에 의하여 통보된 단체는 그 목적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제91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 및 인권침해 등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7.>

② 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할 때에는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2조(간행물 발간) (삭제) <2021. 9. 15.>

제2절 장학

제93조(장학금) 학생에게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우리 대학은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에 곤란을 겪는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장학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절 규율과 상벌

제94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또는 특히 선행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95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하여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판단된 사람에게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1. 9. 15.>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학생을 징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구두 진술, 증거 제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6조(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 교직원 및 학생은 남녀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5장 학칙 개정

제97조(학칙 개정) ① 학칙 개정은 총장이나 재적 3분의 1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재적 3분의 1 이상의 학생의 요구로 발의된다. <개정 2015. 11. 18.>
② 제안된 학칙 개정안은 총장이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학칙 개정은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 한 후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5.>

제98조(학칙시행) 이 학칙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제1349호, 2014. 9. 1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 학칙의 폐지) 대학원 학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학칙 통합에 따른 적용 특례)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개정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 등의 개정) 우리 대학 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각각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교육지원과”를 “교무과(처)”로 한다.
2. “교육지원과장”을 “교무과(처)장”으로 한다.
3. “학생지원과”를 “학생과(처)”로 한다.
4. “학생지원과장”을 “학생과(처)장”으로 한다.
5. “총무과”를 “총무과(사무국)”으로 한다.
6. “총무과장”을 “총무과장(사무국장)”으로 한다.
7. “정책개발원(장)”을 “기획처(장)”으로 한다.

부칙<제1363호, 2014. 12. 1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85호, 2015. 06. 1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88호, 2015. 08. 1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93호, 2015. 09. 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00호, 2015. 11. 1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제77조의 규정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420호, 2016. 4. 2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31호, 2016. 12. 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47호, 2017. 8. 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57호, 2018. 2. 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78호, 2019. 3. 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82호, 2019. 4. 15.>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88호, 2019. 5. 16.>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99호, 2019.11.1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제65조의 제②항의 규정은 2019학년도 2학기에 개설된 교과목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1511호, 2020. 4. 2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등의 개정) 우리 대학 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각각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교무과(처)”를 “교무처”로 한다.
2. “교무과(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3. “학생과(처)”를 “학생처”로 한다.
4. “학생과(처)장”을 “학생처장”으로 한다.
5. “총무과(사무국)”를 “총무처(사무국)”으로 한다.
6. “총무과장(사무국장)”을 “총무처장(사무국장)”으로 한다.

부 칙<제1553호, 2020. 11.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584호, 2021. 5.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587호, 2021.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589호, 2021. 9.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594호, 2022.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609호, 2022. 6.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612호, 2022. 8.1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632호, 2023. 4. 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등의 개정) 우리대학 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각각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교육정보원”을 “정보전산원”으로 한다.
2. “교육정보원장”을 “정보전산원장”으로 한다.

부 칙<제1636호, 2023. 6. 2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661호, 2025. 5. 1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679호, 2025. 12. 2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제61조의2, 제61조의3, 제64조 및 제79조 규정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고, 제61조, 제62조 및 제77조 규정은 202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는 조항의 경우 이전 입학생들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부 칙<제1687호, 2026. 5. 2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학의 입학정원

학과	입학정원
초등교육학과	286명

[별표 2] 대학원의 입학정원 <개정 2025. 5. 12.>

입학정원
201명

청주교대 제 호

졸업증서

성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교육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전 공 : 초등교육(심화과정 : 00교육,
마이크로디그리과정: 00과정)

학위번호 : 청교○○○○○ - 학○○○

년 월 일

청주교육대학교 총장